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행위를 처벌하고, 이를 방지하며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윤락’이라는 가치판단적 개념이 아니라 ‘성매매’라는 가치중립적 용어로 ○ 법의 명칭 및 목적에 성매매의 원인이 성매매알선등 중간매개행위에 있음을 명백히 함. - 방지책과 처벌을 포함하는특별법 ○ 2000년 한국이 비준한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에 따른 법률적 조치 강구 - 특히, 성착취를 목적으로한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근절에 대한 법률적 조치 ○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중시로 원인치료 충실히 하려는 의도 ○ 강요에 의하여 성매매된 자뿐만아니라 성을 파는행위를 한 자 역시도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의한 피해자라는 점에서 수사 절차나 기타 절차 및 보호 규정에서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들도 포함하여 입법 목적에 반영할 필요있다.[미국 인신매매피해자와 폭력방지법(2000)에 근거한 2002년도 인신매매보고서 중 인신매매원인 서술항목에 따르면 ‘빈곤,실업,고용구조의 현실에서 고임금과 편한 직장이라고 하는 기망으로 여성들을 성매매시장으로 유인하는 현실로 인하여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외국입법례> ○ 미국-인신매매와 폭력피해자방지법 ○ 스웨덴 -여성폭력방지법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요보호자"라 함은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행위"라 함은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행위와 그 관계를 말한다. 가. 성매매행위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 나. 성매매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행위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려는 자를 고용 또는 관리하는 행위 마. 성매매 행위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바. 위 각목에 해당하는 정을 알면서 성매매행위자를 공급 또는 소개하거나 알선 등 행위자 또는 성매매행위자를 위하여 근로계약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성매매행위 및 알선 등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등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 바. 위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배하는 관계 3. "성매매된 자"라 함은 가 목 내지 다목의 행위 및 상태로 인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와 위 각 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인여성, 장애인 중 다음 각호의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청소년'을 말한다. 가. 성적 인신매매, 감금, 강간, 폭행 나. 위계 또는 선불금 등 채무의 이용 다. 고용 또는 관리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이하 "마약 등"이라 한다)에 중독된 상태	○1961년 제정된 현행법은 '윤락여성' 즉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유지하여 이런 여성에 대한 도덕적인 잣대는 성매매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보지 못하게하고 상대 남.성은 '사회적 필요악'으로 제외되는 기준으로 작용 - 현행법에 성을파는 경우만 정의 ○또한 남녀가 전도되는 현상도 반영하여 남녀를 분리하는 용어는 삭제함 ○현행법의 "요보호자"개념을 삭제함. ○청소년성보호법에서와 같이 유사성교행위도 포함 ○자율적의사에 의한 '성매매행위자'와 강요등에 의한 '성매매된 자'를 구분하여 조치를 강구함 - "성매매된 자"란 이 법에서 피해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상임. ○ 장애인 청소년 국가간 인신매매피해자 등 본인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간주하는 국제협약이나 다수 국가들의 입법례에 따라 비범죄화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행위에 부수적인 행위로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와 독립하여, 성매매행위에까지 실제 연결되지 않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자를 고용하는 것 자체를 독자적으로 성매매알선등 범죄의 독립유형으로 규정하며, 이와 별도로 자신의 업소에 성적 음란행위를 수반하는 유희행위를 제공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고객에게 성적 흥분을 야기하여 그 상황에서 자신이 고용하거나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연결된 업소 등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를 성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준비하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도 독자적으로 성매매알선등 범죄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

따라서 고용 또는 이용행위 자체 역시도 독립된 알선등 행위의 유형으로 처벌하여야만 매개체들에 대한 실효성있는 처벌이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성매매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에서는 광범위한 성매매알선 조직 및 전달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이 가장 실효성있는 수단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4. 제3호 가항의 “성적 인신매매”라 함은 성을 파는 행위, 알선 등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서 정한 “음란”행위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을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을 불문하고, 사람을 모집, 운반, 이동, 은닉, 인도 또는 인수 및 전매하는 일체의 행위(국가간의 이동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성적 인신매매에 관한 위 협약 부속의정서 제3조(a) 규정을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 규정 형법 제288조 부녀매매죄의 구성요건은 1항에서 “약취,유인 개념을”, 2항에서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를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녀매매죄의 범주는 매우 협소하여 성매매산업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적 인신매매의 범주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여연안 제2조 제4호의 “성적인신매매”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성적인신매매와 관련된 유통경로 일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 규정을 하고,이에 따라 안 제12조 제3항 제1호에서 “성적 인신매매”자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노예매춘”의 가능성을 발본색원하고자 하는데 있다.
제3조(적용상 유의사항)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자’, ‘요보호자’ 개념의 삭제로 불필요하게 됨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제5조(국가등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윤락행위의 방지와 요보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 및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매매행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2.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타 원조의 제공 3. 성매매된 외국인 여성의 보호와 국제간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행위의 방지를 위한 국가기관간 업무협조 및 외국과의 사법공조 4. 성매매행위 및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정기실태조사 5. 성매매행위 예방을 위한 각급 학교기관, 군에서의 교육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관계법령과 법 집행에 대한 직무교육	협약의 부속협정서 제9조(인신매매예방을 위한 각국의 책무)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국내법에 명시적으로 반영 외국입법례> 미국의 인신매매 및 폭력피해자보호법의 국무부 산하 전담기구 설치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윤락행위 2.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 3.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4.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5.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신매매, 감금, 강간, 폭행, 협박 등에 의하여 성매매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 3. 성매매행위의 장소나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성매매를 목적으로 타인을 공급 또는 소개하는 행위 6. 성매매행위 7. 성매매알선등행위에 대한 광고행위	금지행위유형과 이를 위반하였을 때의 처벌규정을 구분한 규정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신설>	제5조(국가간 성적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관련기관의 협력) 법무부, 여성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관기관은 국제적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협력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거나 입국하려는 자중 타인의 여권을 소지한 자 기타 외국인여성의 여권을 소지한 자에 대한 “성적 인신매매 혐의자”인지 여부의 확인 및 범죄수사의 개시 2. 국가간 성적 인신매매의 경로와 범죄 조직, 범죄 수단 및 방법에 대한 조사 3.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매매된 자인 외국인의 여권을 소지하는 업주나 중개인 기타 알선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과 그 피해자인 외국인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절한 보호 및 지원	협약 부속협정서 제9조 제4,5항, 제10조, 제11조 5항 등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국내법에 반영,일부 보완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제5장 벌칙 제24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 2. 위계로써 또는 남을 곤경에 빠뜨려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 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20세미만의 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경우(제3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장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6조(성매매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2.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3. 장애인, 외국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자 2. 타인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강간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3. 자신이 고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성을 파는 행위자로 하여금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 불임시술을 하게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성적 인신매매를 한 자.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자신이 고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한 자. ④ 제1,2,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된 자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를 1차적으로 처벌하고, 2차적으로는 그로부터 금전상의 이익을 얻거나 약속받은 자 및 강요행위 유형중 상대적으로 가벌성이 높은 유형을 분류하여 2차적으로 가중 처벌하며, 3항에서는 성적 인신매매와 마약류를 사용하여 성적 착취를 한 자에 대하여 3차로 가중 처벌하는 단계적인 접근을 한 것이다.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제5장 벌칙 제25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2.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유인 또는 권유하거나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 4. 영업으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윤락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자 ③ 윤락행위를 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거나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7조(성매매 알선영업행위 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 아래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성매매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자 2.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자 3. 성을 파는 행위에 종사하리라는 정을 알고서 영업으로 제1,2호의 업소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공급 또는 소개하거나 제1,2호의 업주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근로계약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성매매행위 및 알선 등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자 4. 영업으로 제3호의 목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를 일정한 장소에서 감시하는 등 관리하는 자 및 자신이 공급, 소개 또는 그와 유사한 목적의 계약 등을 대리한 자로서 제3호 소정의 성을 파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를 소개한 후 이를 사후에 관리하는 자 5. 제1,2,3,4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공한 자 ②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을 특정한 장소에서 구금 또는 감시하는 자 및 이를 목적으로 건축물 등에 쇠창살, 잠금장치, 감시 카메라 등 자유로운 출입을 어렵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자는 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포주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소개소등을 악용한 불법 소개,모집,공급 등 형식 여하를 불문한 업소에 대한 성을 파는행위를 하는 자를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자(3호) 및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자(4호)를 독립하여 처벌함으로써 성매매업소에 대한 인력공급체계 및 망을 사회적으로 퇴출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영업으로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자 역시도 처벌하는(1호)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물적 시설과 자금을 제공한 법률상, 사실상의 주체 역시도 처벌하여 이른바 알선 등 전달체계에서 성매매를 기반으로 기생하는 집단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제재를 통하여 성산업을 단계적,체계적으로 퇴출시키고자 하는 취지이다. 성을 파는 행위와 사는 행위에 대한 알선등 유형과 그 수단은 현실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며 그 가벌성도 실제 차이가 있다. 전자가 직접적인 성적 인신착취를 기반으로 한다면, 후자는 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알선(일종의 판촉)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여 처벌할 필요가 크다.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단, 고용인 및 성을 판 본인은 제외한다.) 2.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4.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자 ④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한 자중 고용인 및 성을 판 본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기타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한다. ⑤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의 수입이나 성을 파는 행위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지불받는 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가 받거나 받을 금품 또는 이를 원인으로 조성된 자산을 받아 생활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캘리포니아주 및 영국 등 입법례상 성매매여성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알선범죄자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바, 현실적으로 이른바 ‘기동’, ‘애인’이라는 명목으로 기생하는 집단에 대한 처벌 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법 266h(a)에서는 “부속조항(b)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람이 성매매를 하고 있음을 알면서 그 사람의 성매매 수입으로 생활하거나 부분적 지원을 받은 경우, 혹은 성매매 알선자, 관리자들로부터 대출받거나 선지급 받은 돈으로 생활하거나 부분적 지원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을 유인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들은 경한 범죄 또는 중죄에 해당하며 3년, 4년 또는 6년의 주 교도소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계가족의 경우에도 그들이 그와 같은 수입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에게 성매매를 사실상 강요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가벌성은 충분하게 있다고 할 것이고 이것은 빈곤의 문제만은 아니며 그 빈곤 문제는 공공부조 차원에서 별도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처벌하여야 한다.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제26조 (벌칙) ③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8조(성매매행위) ①성매매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성을 사는 자가 성매매행위와 관련하여 동화상 기타 영상물의 제작을 강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성을 파는 자가 장애인인 정을 알고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성을 사는 자가 성을 파는 자로 하여금 위계, 위력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를 투입하게 하여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의 행위와 관련하여 검사는 수사 결과 동종전과가 1회 이하인 자로서 명백하게 성매매행위를 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이하 '법원'이라고 한다.)에 '보호사건'으로 이를 송치하여야 한다. ⑥수사기관 및 법원은 '성매매행위'와 관련한 수사 및 재판 진행 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가 성매매 관련 사건의 피의자 등의 신분에 해당되는 것이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성을 사는 자의 위계, 폭력에 의한 성매수는 일종의 성폭력의 유형이라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성매수 행위보다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 중전 규정대로 할 경우에도 검사의 재량으로 여성은 기소, 남성은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위험이 있고, 그럴 경우 이 법에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보호사건 제도가 성을 파는 자와 사는 자간에 불균형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동종전과가 1회를 초과하지 않는 모든 자로서 스스로 재범을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보호사건으로 무조건 송치하도록 하여 보호사건을 활성화시킨다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라는 신분은 일종의 사회적 낙인이 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동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 및 사회복지를 위하여도 최소한의 절차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현 행 법	개 정 안	제안이유
<신설>	제9조(광고행위의 금지 등) ①성을 파는 행위, 제7조 제4항에 정한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서 정한 음란 행위를 할 자를 소개 또는 공급할 목적으로 제7조 제1항 각 호의 성매매알선 등 관련 업소의 종업원 모집 공고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 광고행위(각종 간행물 및 유인물, 인터넷, 기타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한 자 또는 직접 모집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을 알면서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이를 게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제공되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유인하는 광고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3,4항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을 알면서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이를 게재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제1,3항의 광고물 및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소 광고행위 역시도 성매매를 유인하는 일종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알선 행위 또는 그 준비행위이므로 이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신설>	제10조(성매매된 자의 추정) ①이 장에서 정한 범죄의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로 조사받는 자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성매매된 자'임을 주장할 경우 동인은 성매매된 자로 법률상 추정하며, 그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임을 수사기관이 입증하여야 한다. ②수사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라는 이유로 입건하고자 할 경우 동인이 제2조제3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본 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본 조항은 실제 수사 실무에서 “강요된 성매매”라고 주장하거나 실제로 인신매매에 의한 피해자임을 주장하여도 윤락행위자로 처벌되는 상황(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변명을 입증하기 위한 참고인을 조사하여 주고 그에 따른 혐의를 풀어주는 기관이 아니라 일단 인정되는 혐의에 대하여 이를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유죄의 보강 증거를 보완하는 것을 본질적인 업무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성매매된 자”로 일단 볼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자가 그와 같은 피해사실을 주장할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수사기관이 성매매된 자가 아닌 성을 파는 자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토록 하여 그 입증이 되지 않는 한 형사입건 자체를 못하게 막는 규정이다.

현 행 법	개 정 안	제안이유
<신 설>	제11조(신고의무 등) ①누구든지 이 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원시설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여성복지상담소의 장 또는 종사자(이하 “시설종사원”이라 한다)는 지원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이용자(입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제6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성매매알선등범죄행위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행위의 조사를 통하여 추적수사되는 것이 실효성이 크다. 특히, 이 청원안에서는 성을 파는행위를 하는 자의 자발적인 신고 또는 자수행위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성매매알선등범죄를 사법적으로 수사 및 처벌하고 그 수익을 몰수,추징함과 아울러 그 업소도 장소적으로 폐쇄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성매매행위의 신고는 매우 중요 성매매알선등 범죄행위에 제공된 장소는 청원안 제21조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타인 명의로 이전되는 탈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시설 및 그 종사자에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현 행 법	개 정 안	제안이유
제6조(비밀보장) 이 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처리중 알게 된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상대방에 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제6조 내지 제9조의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 재판 또는 보호사건의 조사·심리·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시설종사원은 그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성매매행위자 또는 제6조 또는 제7조의 범죄를 고소·고발·신고한 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른 법률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매매 행위자 또는 제6조 또는 제7조의 범죄를 고소·고발·신고한 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인터넷 또는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3조(심리의 비공개) ① 이법에서 규정한 범죄 사건에 성매매된 자 및 성매매 행위자로서 자수한 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 중 자수한 자 또는 고발자를 심리할 경우에는 그 해당자의 사생활보호 또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이 법에서 규정한 범죄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 받은 신고자등과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또는 신변보호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자수자의 경우는 그 누구보다도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심리나 재판을 공개할 경우 보복범죄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고 이것은 성매매가 성매매알선업주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성매매여성은 그 조직의 말단 도구로 이용되는 데 불과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신설>	제14조(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재판장은 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신고자등이 지정하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수사기관은 신고자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신고자등이 지정하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등은 시설종사원 중 1인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소개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신뢰관계에 있는자가 출석하기 전에는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자등이 장애인, 외국인, <u>청소년인 경우에는 당사자 및 보호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u>	
제2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영리를 목적으로 제4조제3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제15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①성매매 행위와 관련한 업소에 대한 소개를 하거나, 성매매행위를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가지는 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채무인수금, 대위변제금, 보증채무금, 신체에 관한 불법적인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약금 약정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채권 기타 위와 관련된 일체의 채권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②이 법에서 정한 성매매된 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 기타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고용한 자가 성매매된 자 기타 그와 관련된 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각종 약정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급한 금전 기타 채권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③이 법에서 정한 성매매된 자에 대하여 <u>인신매매자 기타 알선 등 행위자가 성매매된 자 본인의 채무를 받기 위하여 제3자에게서 지급 받은 금원은 성매매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u>	“인신매매로 인하여 얻은 금품”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서 인신매매 비용을 부담한 자가 성매매여성의 채무 등을 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지불받은 경우 이를 환불할 것을 규정 채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현행 윤방법 20조 채권무효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각종 차용증 기타 계약문서들이 과연 20조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수사 과정에서 쉽게 식별하지 못한 채 오히려 성매매된 자 기타 성매매 여성들이 업소에서 이탈할 경우 사기죄로 입건되어 처벌되는 악순환만 초래하므로 현장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채권관계들을 나열하여 주고 기타 이에 준하는 관계들을 포괄하여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된 자 기타 성매매여성들이 쉽게 채권관계가 무효임을 인지하고 기존의 골레에서 쉽게 이탈하게 하도록 하고, 수사기관 역시도 그러한 업소와 여성의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기죄 처벌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성매매업주를 처벌하는 수사를 촉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반영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제16조(사법경찰관리의 조치) ①사법경찰관리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2조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 제30조, 제35조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성매매된 자의 명시적인 거부가 없는 한 성매매된 자를 이 법이 정한 여성복지상담소 또는 일시지원시설로 인도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리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가 타인의 재산권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수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권의 내역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사법경찰관리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의 현장방문상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여성복지상담소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동행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경찰에서 조사받은 뒤 경찰서 밖으로 나갈 때 또 다시 알선 등 업주에게 끌려 갈 위험에 여성들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시설에 대한 인도가 의무화되지 않을 경우 인권 및 인신보호상 심각한 문제가 초래된다. 또한 경찰은 복지상담소나 긴급보호시설에 대한 인도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의무화하는 것은 복지상담소나 시설의 알선 등 업소 현장조사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의무조항이 아닌 경우 복지상담소의 현장조사 업무는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되므로 실효성확보를 위해서도 경찰등원이 강제되어야 한다. 단지, 협조(전화 연락 등)으로 국한될 경우 상담소 직원들의 신변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행하여 협조하여야 한다.”로 명시하여야 한다. 출동 경찰의 경우 성매매알선업소의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당연히 성매매알선행위를 인지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범죄수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그곳에 있는 성매매된 자를 구호하는 등 인권보호 업무까지도 함께 경찰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어서 경찰의 출동은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출동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만일 “협조”정도로 규정할 경우 출동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며 이러할 경우 실효성이 문제된다.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제17조(형사처벌에 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각 그 형을 면제한다. 1.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자로서 자수자 또는 제6조,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신고자(단, 이 법에서 정한 사건의 초범의 경우에 한한다.) 2. 제8조를 위반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로서 자수자 및 제6조,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신고자(단, 이 법에서 정한 사건의 초범의 경우에 한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각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1.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자로서 자수자 또는 제6조,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신고자로서 초범이 아닌 자 2. 제8조를 위반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로서 자수자 및 제6조,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신고자 ③수사기관은 성매매된 자 및 제1, 2항 규정에 의하여 면책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성매매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분이 된다는 점을 구두로 경고하고 문서상으로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성매매된 자에 대하여는 성매매행위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한 선불금 기타 일체의 금품 및 위약 약정에 따른 채무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채무와 관련하여 이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타 법률의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매매업소의 이른바 “빠끼”등 종업원들로 하여금 일종의 내부비리제보자 역할을 하게 하고 그들을 형사면책시키며, 안 19조 보상금도 지급하고 신변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매매업소의 단속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취지이다. 이 조항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주체로 한 것이며 이들 중 자수자와 제12조, 제13조 제1항 내지3항 위반 사항들에 대하여 내부비리를 제보할 경우 형사특례를 보장하고, 이들에 대한 내부비리제보자의 19조에 따른 보상금 제공을 하고 보호프로그램을 가동하려고 하는 것이다. 표현이 부적절하다면, “- 파는 행위를 한 자 중 자수자 및-”으로 수정하여도 무방하다. 실무상 불법원인 채권무효 조항이 있음에도 성매매된 여성으로서 착취에서 장소적으로 피신하는 행동을 할 경우 대부분 포주 등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역으로 구속되는 말도 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다.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를 제도적으로 막아야만 성매매업소의 착취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각종 자수,신고에 대한 특례 및 보상금 규정도 이 규정으로 신고 및 자수자가 보호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자수,신고자가 재산범죄의 피의자로 역으로 입건되어 처벌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성매매된 자가 아닌 성매매여성, 기타 하부 알선종업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자수자 기타 신고자의 경우 필요적 면제로 입건을 하지 않게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임의적 감면을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전달체제를 노출시켜 형사수사절차가 촉진되도록 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검토안은 자수자를 형법상의 임의감경조항으로 방치하여 놓고 단지 예외적으로 알선업주의 알선행위를 신고하여 자신의 성을 파는행위가 불각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임의적 감면을 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처벌의 특례를 90%이상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여연안의 위 규정은 이 법 전체의

가장 골격이 되는 조항으로서 고도로 은닉되어 있는 성매매알선범죄를 “내부비리제보 시스템”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노출시켜 엄벌하고 각종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퇴출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항 조차 두지 않는다면 이 법 역시도 사문화된 입법 가능성

4항은 성매매알선업소를 중심으로 제도화,조직화되는데 실무적으로 기여하는 업주와 성매매여성간의 채권채무관계에 기인한 업주의 사기죄 등 고소 사건으로 인한 성매매여성의 사기죄 피소를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줌으로써 성매매 굴레에서 해당 여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는 조항이다. 이미 성매매를 전제로 한 채권 채무관계는 무효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입장에 따라서는 이를 사기죄로 입건하여 처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면 “채권무효 조항”만으로 성매매된 자 기타 성매매여성 및 그 가족들을 보호할 수 없고 성매매알선업주나 기타 인신매매 조직은 이 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례 규정을 두는 것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채권에 국한된 예외적인 것이어서 입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없는 것이다.

가령 실무상으로 논쟁이 되는 것은 이러하다. 즉, 성매매업주들은 성매매여성이 “채권무효 주장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 선불금 달라. 또는 빚 갚아 달라”고 하여 돈을 지불하여 데리고 왔더니 며칠만에 도망갔다.”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빚을 갚을 의사가 없는데도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형태의 사기죄로 입건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형사 고소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은 무효화된 채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채권관계를 맺게 한 성매매여성과 알선업주와의 관계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실제로 그러한 사례에서 대부분의 여성은 자신이 속인 바 없다는 점을 밝히더라도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사기죄로 처벌받고 별도로 종전보다 많은 금액의 차용증등을 작성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됨으로써 점점 더 큰 구렁텅이에 빠지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성매매업주는 알선범죄를 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을 대가를 지급하고 데려오는 것인데이것 자체가 범죄행위이므로 이러한 경우 설사 극히 일부의 성매매여성이 사기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해는 성매매업주가 성매매알선범죄행위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도 없고, 보호하게 될 경우 오히려 국가가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형사정책적으로도 성매매알선업주에 대하여 사기죄로 이를 보호하는 것은 실정법으로 차단시켜야 할 당위성이 있다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신설>	제18조(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①외국인여성이 이법에서 정한 범죄로 인하여 피해 입은 사실을 고소·고발 또는 신고하여 수사 및 형사소송이 진행중이거나, 해당 외국인여성이 수사절차의 참고인 또는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 당해 심급절차에서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처분의 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있는 외국인여성에게는 이 법이 정한 지원시설의 이용 등 성매매된 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외국인여성에게 금전급부의 불이행,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의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제3항, 제31조, 제33조 내지 제36조를 준용한다	

현 행 법	개 정 안	제안이유
<신설>	제19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서 정한 범죄에 대하여 <u>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u>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의 재정신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제20조(몰수·추징) 제6조, 제7조, 제9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다음 각 호의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1. 제6조, 제7조 및 제9조에서 정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일체의 재산(단,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수익은 술값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총 수령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그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기타 제1호의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일체의 재산. 3. 제1호, 제2호의 재산 및 그 재산과 그 재산 외의 재산이 혼합된 재산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제21조(보상금) ① 제6조, 제7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확정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는 몰수·추징된 금원 중 3/100 이상 15/1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신고자(자수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타인의 범죄행위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상금 지급 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실적으로 내부비리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범죄신고행위를 하는 것은 발생하기 어렵고 따라서 자기범죄를 자수하여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드러나면서 해당 업소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알선범죄의 수사의 단서가 확보될 것이며, 이와 별도의 적극적인 신고행위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상금 제도의 취지를 살릴려면 자수로 인하여 수사의 단서가 제공된 경우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처분)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 한다. 이하 같다)은 영업으로 성매매행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장소로 제공하는 때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 시설의 폐쇄(신고에 의하여 영업하는 영업소를 대상으로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제외한 기타 제6조 내지 제8조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그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 및 장소에 대하여 시설 등 폐쇄명령,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수사기관은 수사 결과 제1,2항의 범죄행위의 장소로 제공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경우도 당해 건물이 범죄행위의 장소로 제공되는 것을 알았음이 분명하므로 (성매매업소의 장소로 제공된 것임) 이러한 경우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상의 업태위반 정도의 위법행위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계속적인 범죄행위를 하고, 그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영업정지라는 개념을 용인한다는 것은 “범죄행위를 정지하라”는 한시적인 처분이 되는 것이고 그 정지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다시 그러한 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것은 반드시 폐쇄되어야 할 것이지 영업정지의 대사이 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영업이 아닌 경우인 경우에는 영업정지,시설폐쇄를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2항 참조) 구분하였으므로 가혹한 행정처분이 되지는 않는다. 또한 폐쇄명령을 받은 장소에 대하여도 유사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 장소에 동종,유사 업태로 신고하고 성매매알선업을 음성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취지가 바로 안 제4항이다.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④ 폐쇄명령을 받은 자 및 그 소유자는 같은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사 업소를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개설할 수 없다. ⑤ 폐쇄명령을 받은자는 그로부터 3년간, 기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동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동종 또는 유사 업소를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개설할 수 없다 ⑥ 수사기관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범죄 행위자의 인적 사항 및 조치 결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상자료를 전산관리하고 그 내용을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야 한다. ⑦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흥접객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소에 대한 인·허가 및 신고와 관련하여 해당자가 제5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제2장 선도보호 제8조(보호처분) ① 소년부판사는 소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락행위를 한 20세미만의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판사는 결정으로써 6월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소년법중 보호사건에 관한 규정(제33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3장 보호처분 제23조(성보호사건의 처리) ①검사는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성매매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성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관할)①성보호사건의 관할은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성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행한다. 제25조(보호처분의 결정 등)①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에의 성매매행위자의 출입 및 연락금지 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에 의한 사회봉사(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한 한다)·수감명령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의한 보호관찰 4. 이 법이 정하는 지원시설에의 교육·상담위탁 5.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②제1항 각 호의 처분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③법원은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 성매매행위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지원시설, 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2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제9조(선도보호조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요보호자중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 및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에 입소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에 따라 일시보호소 및 선도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선도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요보호자가 20세미만의 자로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등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 및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의 퇴소를 요청할 때까지 본인의 동의로써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갈음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에서의 선도보호기간은 1년의 범위내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조치를 받은 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의 입소 및 퇴소의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선도보호의 내용)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담 및 치료 2. 개인의 정서안정과 인격향상을 위한 교육 3.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취업안내 4. 의료보호·건강관리 및 생활지도 5. 기타 선도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6조(보호처분의 기간) 제25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u>보호처분기간</u>은 3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보호처분의 변경) ①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25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기간은 6개월을, 동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다른법률의 준용) 성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내지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8조, 제30조 내지 제32조제1항, 제34조 내지 제39조, 제43조 내지 제44조, 제46조 내지 55조 규정의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폭력범죄”는 “성매매행위”로, “가정보호사건”은 “성보호사건”으로 본다.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제3장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 제11조(시설의 종류) ①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시보호소 : 요보호자에 대한 일시보호와 상담을 행하는 시설 2. 선도보호시설 :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에 의하여 위탁된 자를 대상으로 선도보호를 행하는 시설과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조치에 의하여 입소한 자를 대상으로 선도보호를 행하는 시설 3. 자립자활시설 : 요보호자 또는 선도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자중 사회 적응이 곤란하거나 거주할 곳이 없는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숙식·직업알선 등을 제공하여 사회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원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 제29조(지원시설의 종류)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위한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지원시설 :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중 이용희망자, 제2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한 자 등을 대상으로 3월의 범위 내에서 숙식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시설 2. 자립지원시설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시설 이용자로서 희망자, 제2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한 자 등(청소년인 경우를 제외한다)에게 6월의 범위내에서 숙식,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설. 이 경우 이용기간은 6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청소년지원시설 : 제2호에서 규정한 자립지원시설 이용 해당자가 청소년인 경우 성년에 달할 때까지 숙식,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등교육 과정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 중등교육 과정의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제12조(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와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된 자 및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을 시·도별로 1개이상씩 <u>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신고하고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시설의 설치기준·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관하여는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제31조(시설의 업무) ①긴급보호시설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숙식의 제공 2. 개인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4. 신변보호 5. 법률정보 제공 및 법률관련 지원 ②자립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립자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실시와 취업정보서비스 연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급부 및 각종 프로그램의 연계서비스 제공 3. 기술교육(위탁교육 및 연계교육 포함) 4. 자녀 동반시의 보육 지원 및 필요시 모자복지법상의 모자자립시설에의 연계 지원 5. 기타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위 제1,2항의 시설은 제25조 제1항 제4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상담업무를 병행 실시한다.	대통령령으로 백지위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문제가 있고, 시설의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의 업무내용을 국가의 의무로 강제할 수 없으며, 예산상의 고려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는 등 위험이 있다. 법률에서 규정.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제32조(시설 사용 자격 등) ①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하는 자는 제29조에서 정한 시설 입소에 관계없이 당해 시설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제1항의 자중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상담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시설이용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 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퇴소 및 이용 중단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시설의 장은 시설이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단체 생활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조치 또는 이용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에서 정한 자는 제29조 제2호에서 정한 시설을 1회에 한하여 같은 기간 동안 연장 사용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는 만20세에 달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일종의 시설이용자의 권리를 정한 근거조항이며, 국가와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의무화하는 강제규정이다. 이르 삭제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여부 및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예산은 얼마나 편성할 것인가 여부를 행정부에 백지위임하게 되고, 예산의 필요에 따라서 당해 서비스의 내용이 좌우되는 악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법률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제13조 (시설의 운영) ① 시설의 장은 요보호자의 건전한 가치관과 자립생활의 능력을 함양시키고, 사회적응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훈련등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요보호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후 1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장은 요보호자를 선도보호함에 있어 이들의 인권을 최대한보장하여야 한다. ④기타 시설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 (시설에의 우선보호조치) 시설의 장은 경찰관서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설입소를 원하는 요보호자의 입소의뢰를 받은 때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입소대상자에 우선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시설의 운영) ①시설의 장은 시설 이용자의 사회적응능력 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시설의 장은 시설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입소 후 1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에 질병 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시설의 장은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기타 시설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는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제14조(여성복지상담소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보호자의 상담을 통한 선도를 하기 위하여 여성복지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모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복지상담소는 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상담소의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와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여성복지상담소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상담 및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여성복지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여성복지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상담소의 설치기준·신고절차, 운영기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관하여는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여성복지상담원) ① 시·도,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상담소에는 여성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상담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요보호자의 가정 및 신상에 대한 조사·상담 2. 요보호자의 직업알선	제35조(여성복지상담소의 업무 등) ①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장방문 등 상담 2. 시설이용에 관한 고지 및 시설에의 연계 3. 법률정보 제공 4.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시 동행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상담소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상담소의 상담원은 상담관련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삭 제>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3. 요보호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선도 4. 요보호자의 실태파악 5. 요보호자를 위한 지역사회안 시설의 활용 알선 6. 가정문제상담 및 건전한 사회의 조성을 위한 지도·계몽 7. 모자복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의 업무 8. 기타 선도보호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상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상담원의 임용자격기준, 배치기준 및 교육훈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수탁의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보호자의 입소를 위탁 또는 의뢰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삭 제>	
	제36조(의료기관 지정 등) ①여성부장관은 제28조에서 규정한 시설의 이용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의료기관을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은 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설이용자에 대한 질병치료, 보건상담 및 지도 등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및 상담소 이용자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유보> 제 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의 특례) ①성매매된 자 중 수사기관에 의하여 형사처분이 면제된 자중 입소자를 포함한 일체의 시설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동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로 본다. ②위 항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 중 생계급여는 당해 시설에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시설을 경유하여본인에게지급한다. ③시설이용을 중단하거나 퇴소한 자에 대하여 시설의 장은 즉시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시, 군,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중단한다. ④기타 위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본 조항은 일종의 한시적인 일시보호 제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설이용을 전제로 하여 국기법상의 급여 지원과 각종 교육훈련을 통한 노동 시장 복귀 등을 도모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성매매된 자 및 기타 여성의 경우 복귀할 가정이 대부분 없고,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관계도 단절되어서 국기법상의 긴급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성매매와 관련된 사회적 제비용을 고려한다면 그와 같은 비용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 또한, 성매매여성들은 시설을 통하여서만 실질적으로 기초법상의 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용될 여지도 거의 없다. 필요에 따라서는 복지부와 협의하여 이번에 아예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된 자 등을 포괄하여 국기법상의 조건부 급여 또는 한시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지 개선을 병행하여야 한다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제4장 보칙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여야 한다. 단,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1,3,6호에 정한 사항에 대한 예산은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도·감독) ① 여성부장관은 시설 및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 및 상담소에 출입하여 시설·관계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2항의 시설 및 제14조제2항의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 및 상담소에 출입하여 시설·관계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8조(지도·감독) ①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설 및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상담소를 운영·관리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 및 상담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립한 시설 및 상담소에 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 목적, 일시 등을 시설 및 상담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출입 시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제17조(폐지·휴지등의 신고)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제30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 하고자 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4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시설이 아니면 여성복지상담소, 일시지원시설, 자립지원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제18조(시설의 폐쇄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또는 상담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제12조제3항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을 거부한 때 3.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시설 및 상담소의 폐쇄 등) ①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설 또는 상담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립한 시설 및 상담소에 한 한다. 1. 제29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나 상담소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을 침해하거나 이용권을 박탈, 제한하는 경우 및 부정 시설이용자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지급 받게 하거나 지급 받는 경우 3.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0조를 위반한 때 5. 시설장 기타 시설종사자들이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를 범한 때 6.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 1항 제3호,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종류와 기준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나 시설 및 상담소의 폐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제26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시설 또는 상담소의 종사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운영한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장 벌칙 제4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③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내지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사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내지 제9조 및 제43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제28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 또는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 또는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 3.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u>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u>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제6장 보칙 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다. 제4조(보호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보호처분 및 선도보호조치의 집행이 진행중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시설·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一時保護所”는 이 법에 의한 “일시지원시설”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善導保護施設” 및 “自立自活施設”은 이 법에 의한 “자립지원시설”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女性福祉相談所”는 이 법에 의한 “상담소”로 본다.	

현행법	개정안	제안이유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의 죄 ②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③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1條 및 第14條의 규정에 의한 福祉施設”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2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로 한다. ④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호중 “淪落行爲등防止法”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로 한다.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26條第3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1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善導保護施設”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로 한다. 제16조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1條第1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1호·제3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4條”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31조”로 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